

#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6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6월 9일

3. 제안이유

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도세감면 면적범위를 확대하여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최초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
  -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입주자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없던 것을  
→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

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

※ 현행 도세감면 조례상 감면내용(취·등록세)

- 전용면적 : 40m<sup>2</sup>이하 : 100% 면제
- 전용면적 : 40m<sup>2</sup> ~ 60m<sup>2</sup>이하 : 50% 경감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도세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

현행 전용면적 60m<sup>2</sup>이하인 공중주택에 대하여 도세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전용면적 60m<sup>2</sup>초과 85m<sup>2</sup>이하인 공중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첨 부

-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